

#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#### 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변화와 시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

#### 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총 정원: 변동없음

- 집행기관: 1,843명 → 1,841명(△2명)

- 의회사무기구: 47명 → 49명(+2명)

-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4조의 별표 3)

- 정원 총계: 변동없음

- 일반직 계

- 4급: 12명 → 13명(+1명)

- 6급 이하: 1,731명 → 1,730명(△1명)

- 한시 정원표(안 제6조의 별표 4)
  - 미래도시기획실(4급): 삭제
  - 아시아육상추진단(5급): 신설(준속기한 : 2025. 6. 30.)

##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- 본 개정조례안은
  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검토 결과,
  - 전체 총 정원의 변동없이 실국장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산업, 교육, 복지, 농업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구미시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5. 토 론 요 지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